

#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26. 1. .

발 의 자 : 박선미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관내 범죄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하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의3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경찰관서에서 범죄 예방 및 기타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순찰 목적으로 상시 운행하는 순찰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, 경찰관서 차량 전용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합법적인 주차 면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,
- 근거 법규인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2제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음.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